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-18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(제도의 변경 등)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편법 제15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3의 대금교환에 대하여 부가할 수 있는 기본 역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(폐지)함을 공고합니다.

2011년 3월 23일

우정사업본부장

통상 우편물 대금교환 폐지에 관한 공고

1. 폐지 사유

-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대금교환(현금 추심 위탁 물건의 보관교부)을 대체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량 감소

2. 폐지 대상 : 통상 우편물 대금교환

※ 단, 소포 우편물 대금교환은 현행 유지하여 서비스 제공

3. 폐 지 일 : 2011년 5월 2일